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책임보험료 지원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특구사업자들의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책임보험 개요

- (가입목적) 실증특례 및 지역특구법 제88조제2항, 제90조제14항에 의거하여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필수 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2024. 2. 6.>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2024. 2. 6.>

- (가입기간) 실증 개시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
 - * 책임보험 갱신의 경우 보험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야 함
- (보상한도) 대인 최대 1.8억원, 대물 최대 10억원, 무제한

2

지원대상

○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31호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9호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 (지정목적) 재활용이 금지된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여 의료기기(골이식재)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치의학 ‘연구-임상-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지정기간) 2024. 06. 01. ~ 2030. 12. 31.(6년 7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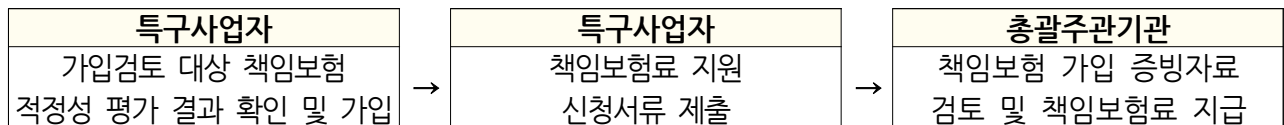
3

지원개요

○ (지원규모) 보험료의 80%(20,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4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9월 4일(금), 18:00

○ (접수방법) 제출서류 1개의 통합 압축파일로 만든 후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통합 압축파일 이메일 접수

① 파일명 :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료 지원_기업명

②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출하며,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③ 제출 후, 문의처 담당자에 전화 확인

○ (지원신청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통합 압축파일로 이메일 제출

구 분	제출서류
1	[서식1] 책임보험료 지원 신청서
2	[서식2]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3	[서식3] 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4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 등 가입 관련 서류)
5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통장사본

6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①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기타 사정에 의하여 축소·변경·취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② 지원제외

-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가 아닌 경우, 서류검토에서 제외
-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7

접수 및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의료바이오산업본부 이노덴탈센터	정병진 선임연구원	053-602-1824	jbj6733@dgtp.or.kr